

방사선 안전규제 제도 개정에 관한 안내

11 대상

-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*의 생산·판매·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(허가사용자), 신고사용자 및 동 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
- *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

2 목적

본 안전공지는 최신 방사선 안전규제 제도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, 개정된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③ **주요 내용**

- 1. 업무대행 병행 허용, 업무대행실적 등 보존기간 합리화
 -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 및 별표7제12호 개정(2024.4.25. 시행)
- 배경 및 목적
 - 업무대행자의 전담인력(RI면허소지)은 허가·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
 - 병행금지 규정으로 인해, 전담인력은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업무대행만 가능하여 유연한 인력 활용 제한
 - **업무대행실적 보존 규정**으로 인해 **폐지한 업체의 업무대행실적** 또한 **보존**해 야하는 상황
- 주요 개정사항
 - 전담인력이 허가·신고사용자 구분없이 업무대행할 수 있도록 병행 허용
 - 병행할 수 있는 최대업체 수는 30개로 하되, 허가사용자를 대행할 경우 2개 업체를 대행*으로 하는 것으로 취급



- * 허가사용자 업무대행 시 최대 15개, 신고사용자는 최대 30개까지 가능
- 업무대행실적 등 보존기간을 위탁업체 폐지 시점까지로 합리화

현 행	개 정 안			
제71조(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) ①	제71조(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) ①	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	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	④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			
대행하는 소속 전담인력은 제2항	려는 자는 소속 전담인력 1명으로			
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각각 분리	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병			
<u>하여 대행하여야 한다.</u>	<u>행하여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</u>			
	2항의 허가사용자 1명을 대행하는			
	<u>것은 제3항의 신고사용자 2명을 대</u>			
	<u>행하는 것으로 본다.</u>			

- 2.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목적 명확화, 용어 정비
 -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항 개정(2024.4.25. 시행)
- 배경 및 목적
 - 모든 허가사용자(생산·판매·사용·이동사용)는 방사선기기를 검정·교정, 검문·검 색, 홍보 등(진열·전시) 목적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시 별도 신규·변경허가 없 이 변경신고만으로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가능
 - 홍보 목적으로 방사선기기를 **시연(기기작동 포함)**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진열· 전시로 보고 **변경신고**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, **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**
 - 규칙 상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 행위를 '이동사용'이라 표현하여 '이동사용허가'와 구분되지 않는 등 잘못된 법령해석* 발생
 - * (사례) '이동사용허가'를 취득한 자만 신고할 수 있는 사항(작업장 개설 신고)을 모든 허가 사용자가 '변경신고'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
- 주요 개정사항
 - 검정·교정, 검문·검색, 홍보 외로 인정할만한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목적은 사



실상 없으므로 **'홍보 등'을 '홍보'로 수정**

- '시연'의 경우에도 충분한 사전안전성 검토를 하고, 허가규제 적용은 과도한 점, 업무 계속성 등을 고려 '시연'을 인정
- 민원인, 규제기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허가사용자에 적용되는 규정 상 '이동사용*'용어를 '사용'으로 수정
 - * 작업장개설신고'는 '이동사용허가자'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'이동사용'용어 유지

현 행	개 정 안				
제63조(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) ①	제63조(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) ①				
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"총리령					
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					
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					
경하려는 때"란 다음 각 호의 어느				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				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	1				
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					
가.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	가				
외에서 검정 또는 교정을 목적					
으로 <u>이동사용하기</u> 위하여 그	<u>사용하기</u>				
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					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				
다.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	다				
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(이하					
"방사선기기"라 한다)를 사업소					
외에서 검문ㆍ검색 또는 보안을					
목적으로 <u>이동사용하기</u> 위하여	<u>사용하기</u>				
그 사용장소를 변경하는 것					
라.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	라				
제품의 <u>홍보 등을 목적으로 진</u>	<u>홍보를 목적으로 진열 ·</u>				



<u>열 · 전시하기</u> 위하여 그 사용장	전시ㆍ시연하기				
소를 변경하는 것				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		
② · ③ (생 략)	②、③ (현행과 같음)				
제64조(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	제64조(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				
고) ①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	고) ①				
라 제63조제1항제1호(나목은 제외					
한다)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					
하려는 자는 <u>이동사용</u> 의 개시 5일	<u>사용</u>				
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고서					
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신					
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					
또한 같다.					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3. 신고사용자 정기교육 의무 강화

② ~ ④ (생 략)

-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개정(2025.4.23. 시행)
- 배경 및 목적
 - 법률에 의무 주체 범위설정에 대한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신고사용자에 대해 교육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사 선안전관리자까지 일괄적으로 교육을 면제함으로써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역 량 제고에 부정적
- 주요 개정사항
 - 법률에 신고사용자에 대한 교육 의무 면제 근거를 기술하되, 현장 안전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는 교육의무 면제에서 제외

현	행	개	정	안	



제106조(교육훈련) ① 원자력관계사 제106조(교육훈련) ① 원자력관계사 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 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 장해 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 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 원자력관계사업자(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)의 경우: 방사선작업 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 입하는 사람
- 2. 신고사용자의 경우: 방사선안전 관리자

②·③ (생 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